제2700호 2019. 12. 27. 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: 홍 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

전화: 3396-4955
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 기관의장 람

구

보

### ● 공 고

제2019-968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...... 2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a href="http://www.junggu.seoul.kr">http://www.junggu.seoul.kr</a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-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-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



제2700호 3-2 2019, 12, 27,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-968호

#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> 2019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를 일부 면제함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여 주민 편익 증진 및 구정 만족도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」조문 신설

- 제6조(수수료의 감면) 제5항 신설
  - : 무잇민원창구 발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주민등록등·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·제적부 발급 수수료 면제

#### 3. 의견제출

-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: 민원여권과장, 전화: 02-3396-4783, FAX: 02-3396-8647, E-mail: aldlswl@jungq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제2700호 3-3 2019. 12. 27.

[붙임]

#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제6조(수수료의 감면)

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」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·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·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.

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	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
제6조(수수료의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 1. ~ 10. (생 략)	제6조(수수료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
②삭제(1997.1.18.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 조례,세4조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, 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 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〈신 설〉	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⑤ 「민원사무 차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인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 계등록부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.